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6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9. 12. 30.(월) 14:30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한상혁 위 원 장
허 욱 상임위원
표철수 상임위원
김창룡 상임위원 (4인)

□ 불참위원 : 김석진 부위원장 (1인)

제6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4시 30분 개회 】

1. 성원보고

○ 한상혁 위원장

- 전해선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전해선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다섯 분 중 네 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석진 부위원장님께서 공무상 외부 일정으로 인해 불참하셨습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전해선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한상혁 위원장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올해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2019년도 제6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전차 회의록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전차 회의록 및 속기록은 속기록 작성 및 위원님 확인이 끝난 후 차기 회의에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3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2019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 - OBS경인TV(주) (2019-67-330)

○ 한상혁 위원장

- 먼저 <의결안건 가> “2019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 OBS경인TV(주)”에 대하여 지상파방송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장대호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2019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 - OBS경인TV(주)입니다. 2쪽입니다. <1> 의결 주문입니다. OBS경인TV(주)에 대하여 <붙임 1>과 같이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과하여 재허가를 하되, 허가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허가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재허가 조건 중 아래의 조건에 대한 연도별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주요 조건입니다.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투자는 2019년 재허가 시 제출한 ‘연도별 프로그램 제작비 투자 계획’ 수준 이상으로 투자할 것, 프로그램 제작비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하며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아 매년 4월 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매년 4월 말 제출하는 이행실적과는 별도로 2분기, 3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프로그램 제작비 투자 이행실적을 제출할 것, 위의 프로그램 제작비 투자와 별도로 ‘19년 재허가 시 제출한 ‘연도별 프로그램 제작비 투자 추가 이행계획’ 수준 이상으로 투자할 것, 프로그램 제작비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하며,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아 매년 4월 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매년 4월 말 제출하는 이행실적과는 별도로 2분기, 3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프로그램 제작비 투자 이행실적을 제출할 것, 2019년 재허가 시 제출한 ‘사옥의 인천이전 추진계획’을 이행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재무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 연도별 적정 유동성 보유기준을 설정하고, 유동성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등 유동성 위험관리체계를 마련하여 그 이행실적을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최다액출자자는 재허가 청문 시 약속한 30억원 자금대여 및 경영안정을 위한 추가 지원 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년 4월 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최다액출자자는 외부기관의 경영진단 컨설팅을 받아 OBS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재허가 이후 6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년 4월 말까지 방송통신

위원회에 제출할 것, 3쪽 제안이유입니다. 제62차 전체회의에서 'OBS경인TV(주)에 대해 청문을 개최하여 경영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 등을 확인한 후 재허가 여부를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청문 결과 등을 반영하여 OBS경인TV(주)에 대한 재허가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OBS경인TV(주) 일반현황 및 재허가 심사결과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주요 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4쪽 OBS경인TV(주)의 경영 안정화 계획의 주요내용입니다. 프로그램 제작비 투자는 차기 재허가 기간 동안 총 499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본적인 프로그램 제작비 투자에 더하여 2017년·2018년 프로그램 제작비 투자 미이행 관련 금액을 제작에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인천 계양방송통신시설 입주 공모 참여 또는 인천 내 건물 임차 등을 통해 2021년까지 인천시로 본사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OBS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자금대여, 융자, 담보 제공, 증자 등 필요한 지원을 최다액출자자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선적으로 OBS의 사옥이전 자금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자금대여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지역성 구현 강화를 위해서 자체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확대해 갈 예정입니다. 방송사의 신규 수익 창출을 위한 수익구조를 다각화할 예정입니다. 다음 OBS경인TV(주)에 대한 청문 결과입니다. 청문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OBS경인TV(주) 및 최다액출자자 의견 진술 내용입니다. 경영개선 및 최다액출자자 지원과 관련하여 청문 시 제출한 경영계획은 실현가능성을 가장 우선시 하여 수립한 것으로 동 계획에 반영된 시정명령금액 138억원 집행, 인천 본사 이전은 우선적으로 이행하겠습니다. 최다액출자자는 2021년 사옥이전 등 일시적인 자금 소요가 필요한 시기에 30억원을 법정 최저이자율로 대여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경우 보증, 외부의 콘텐츠를 위한 펀드 유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OBS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OBS의 재무적 안정성도 도모하기 위해 방송을 통해 사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배제하고 새로운 투자자들을 계속해서 발굴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제작비 투자와 관련하여 OBS는 시정명령금액 138억원을 포함하여 향후 3년간 총 499억원의 프로그램 제작비를 투자할 계획이며, 이는 현재 현금보유액을 기반으로 이행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사옥이전과 관련해서는 2021년까지 OBS의 본사를 인천으로 이전할 것이며 자금 운영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혹시라도 문제 발생 시 최다액출자자는 30억원 자금대여를 약속하고 이행 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청문주재자의 의견입니다. OBS의 문제는 만성적이고 상습적인 것으로 2013년, 2016년 재허가 심사 시 나타났던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음, 지주 그룹인 영안모자와 클라크가 적자 및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OBS에 대해 재무적으로 지원할 구상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만약 재허가가 이루어진다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속적으로 OBS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차기 재허가 심사 시에는 심사위원 전원에게 OBS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사전 공람토록 하여, 문제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주지시켜 주기 바람. 다음 6쪽 검토 의견입니다. OBS에 대해서는 청문을 통해 시정명령액을 포함한 프로그램 제작비 투자, 본사의 인천이전에 대한 계획과 의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OBS가 제출한 경영 정상화 계획은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어 재허가를 하는 경우 외부전문가의 경영 컨설팅을 받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또한, 방송광고의 감소 추세를 고려하면 프로그램 제작비 투자, 사옥이전 이행 시 OBS의 완전 자본잠식률의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어 최다액출자자가 확약한 30억원 자금대여 이외 책임 있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재정 악화를 사유로 2013년, 2016년에 조건부로 재허가가 되었으며, 2016년 재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시정명령을 2회 부과받은 점을 고려하면

금번 재허가에 대한 엄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재허가 심사결과 전체 평가점수가 허가기준인 650점을 상회한 점, IPTV·위성방송과 재송신료 협상 타결된 신규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한 점, 경인지역 국회의원·지자체장·시민단체 등의 재허가 요청 건의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건부 재허가를 하되, 허가 유효기간은 최단기간인 3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허가 신청서와 추가로 제출한 경영 정상화 계획, 최대액출자자의 이행각서 및 청문 시 약속한 사항 등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붙임 1>과 같은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OBS의 안정적인 방송사업 유도를 위해 재무상황 변동추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재허가 조건 이행여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행점검 결과 주요 재허가 조건(안)에 대하여 미이행시 허가의 지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향후 계획입니다. 12월 말 2019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방송국 허가증을 교부하고, 내년 1월에 2019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백서를 발간하고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점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 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옥 상임위원

- OBS경인TV는 행정절차법상 재허가 거부를 전제하는 청문까지 실시한 사업자입니다. 2013년, 2016년, 2019년 재허가 심사 때마다 방송사업자로서 존속이 가능한지, 지상파방송사에 부여된 최소한의 공적인 책무를 수행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사업자인지에 대해 많은 고심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번 재허가 심사에서는 총점이 재허가 최저점수를 넘겼지만 중점심사항목에서 배점의 50%에 미달해서 청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허가 심사 총점 652점도 내용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계량평가인 방송평가에서 100점 만점 중 80점을 얻었고, 사업계획서 및 과거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정성평가에서는 100점 만점 중 55점을 얻었습니다. 외부전문가 의견은 사실상 '재허가 거부' 의견을 낸 것으로 봐도 무방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OBS는 현재 완전 자본에 가까운 부실기업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에 따르면 상장회사의 경우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일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또한 자본금이 전액 잠식되거나 2년 연속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일 경우에는 상장이 폐지될 정도로 자본잠식에 대한 시장의 요구는 매우 엄격합니다. 자본잠식률이 93%인 방송사가 과연 시청자를 위해 질 좋은 콘텐츠를 계속 생산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문주재자의 종합의견 역시 OBS 문제는 만성적이고 상습적인 것으로 2013년, 2016년 재허가 심사 때 나타났던 문제점이 개선된 것이 없는 한계기업으로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자본잠식 상황과 그동안의 운영행태를 보면 재허가를 거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올해 심사결과, 전체 평가점수가 허가기준인 650점을 넘겼고, 청문을 통해 경영정상화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재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허가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강력한 조건을 붙인 '조건부 재허가', 즉 의결주문에 동의합니다. 다만, 재허가의 조건으로 OBS에 제출한 경영 안정화 계획의 철저한 이행이 중요합니다. 방송프로그램의 제작비 투자 약속은 방송사의 기본 책무입니다. 투자 미이행 시정명령을 포함해서 앞으로 3년간 총 499억원을 직접제작비로 투자하겠다는 계획은 인천·경기지역 시청자에 대한 공적인 약속으로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본사 사옥의 인천 이전, 경영 안정을 위한 최대액

출자자의 지원, 자체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확대 등의 약속 또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연도별 유동성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최다액출자자는 외부 기관의 경영진단 컨설팅을 받아서 OBS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도록 한 재허가 조건은 향후 OBS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을 적시했다고 판단됩니다. OBS가 제출한 재허가 신청서와 경영 정상화 계획을 보면 예전에 비해 매우 보수적으로 잡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OBS가 제출한 재무계획의 타당성을 재무전문가가 검토한 결과, 영업활동으로 인한 유동성 확보 가능성은 높지만 이는 OBS가 제시한 영업추정손익계산서를 기초로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경영 환경 변화에 따라 실행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무처는 재허가 조건에 따른 이행실적 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경영이 부실한 방송사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를 하고, 재허가 조건 위반으로 시정명령이 반복되며, 재허가 심사 때 현실적인 여건을 들어서 또 다시 조건부로 재허가하는 이러한 악순환은 이제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OBS 주요주주들과 임직원들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임을 잊지 말고 각고의 노력을 통해 OBS의 존재가치를 반드시 입증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추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제가 재허가 심사위원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진에게 2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재허가 조건에 허가 유효기간 3년에도 불구하고 재허가 조건 가운데 아래 <2>번에서 <7>번까지 조건에 대한 연도별 이행실적을 점검해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허가를 취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 **장대호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상황을 봐서 영업정지가 더 적합한지, 취소가 적합한지 어떤 처분이 가장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판단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사실은 이렇게 매번 조건부 재허가를 받는 방송사업자는 조건을 강하게 부여하면 '허가를 취소한다'로 못을 박는 것이 방통위의 행정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에 대해서는 취소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기는 부분이라서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OBS는 원래 사업계획서상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두 차례 시정명령을 받았던 투자 미집행금액 138 억원에 대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부랴부랴 보완해서 사업계획서를 다시 냈는데, 이것은 해당 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재허가를 신청한 이유를 근본적으로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다시 사업자에게 물어본 내용 가운데, 아직 여기에서도 확인이 안 된 것이 올해 예정되었던 콘텐츠 투자비용을 그대로 지키지

못하게 될 것 같다고 했는데 지키지 못하게 되면 또 다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음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하는데 그것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그 액수는 투자액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 **장대호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그 액수가 아직 불확정적이라서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그러면 그 액수가 확정되면 어떻게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그 부분을 다시 부가해야 한다, 미집행되는 것은 우리가 연도별로 앞으로 이행 실적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드시 추가로 포함을 해서 이 안건을 의결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오늘이 12월 30일인데 아직까지 이것이 확정 안 되었다, 그래서 반영이 안 되었다, 이 부분도 OBS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미투자 분이 안 나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것을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 가운데 투자금 집행하는 내역에 포함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그 부분은 지금 표 위원님 의견 관련해서 반영한다면 수정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장대호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2019년도에 투자계획을 얼마나 이행했는지는 아마 회계적인 검증이 끝나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는 그것이 얼마인지 구체적인 액수를 넣을 수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향후 이런 것들이 확정될 수 있다면 그것을 반영하는 것은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오늘 안건에 부가적으로 그 내용을 담아서 의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지나 가면 별도로 미투자 집행분이 떠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OBS의 문제가 크게 보면 2가지입니다. 콘텐츠를 위한 투자금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것, 그다음에 또 자체 프로그램 제작하는 이것을 굉장히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 크게 보면 2가지인데 이 2개가 연동되어 있습니다. 콘텐츠 투자비용에 대한 것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보다 면밀히 따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위원님 말씀하신 2019년도 투자 미이행 분은 현재로서 조건을 수정하기에는 조금 힘든 상황이 그것이 확정이 안 되었고, 그리고 투자금액뿐만 아니라 편성이든 혹은 방송법 위반, 심의규정 위반사항 이런 것들이 2019년 상반기까지 기준해서 점수를 매겼고 거기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심사 대상 기간 이후에 발생한 투자금액뿐만 아니라 편성이든 다른 위반 사항들에 대한 것이 이번 심사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다음 재허가 심사 때 같이 봐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그것이 형식논리상 굉장히 실정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해 말에 재허가 심사를 해 놓고 3년 후 2019년도 뒷부분을 반영해서 보자, 이것은 말이 안 되니까 이것이 정해지는 대로 제작비에 추가 투입할 수 있도록 그런 단서를 달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그 부분은 금액을 구체화하지 않더라도 조건에 표기할 수 없습니까?

○ 표철수 상임위원

- 예를 들어 2019년도 투자분 집행되지 않은 부분은 '향후 이것이 확정되는 대로 어디에 집행한다' 이런 단서라도 붙어야 맞지요.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지금 이 자리에서 딱 조건을 넣기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확인해서 점검하고 체크하는 쪽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그 부분을 금액이 특정이 안 되면 그 항목을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달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권리관계에 대한 중대한 사항을 의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벗어나서 별도로 문구 조정은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 자리에서 문구까지 확정해야 하니까 실무자들이 준비해서 이 안건이 끝나기 전에 지금 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조건에 부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수정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호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경영 및 재정 악화를 이유로 2013년, 2016년, 또 2019년 이렇게 비슷한 조건을 달아서 재허가를 하게 되는 이런 현 상황이 참 곤욕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지 안타깝습니다. 지금 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명하고도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또 이것이 최후의 기회다, 마지막 기회다 이런 점이 명시화된다면 허 위원님이 제시한 그 의견에 저는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지금 의결주문 2항 '허가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재허가 중 아래의 조건에 대한 연도별 이행

실적을 점검하여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표현된 부분에 대해 표 위원님은 '취소할 수 있다'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취소한다'라고 문구를 수정하자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시정명령 불이행 상태가 계속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장대호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지금 불이행에 대해 분리 조치할 수 있는 조건은 충족된 상황이고 그런 의미에서 재허가 기간에도 불구하고 취소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분명한 것이지요?

○ 장대호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2019년 프로그램 제작비 투자 관련해서는 저희가 고민스러운 것은 이 계획을 수립할 당시 전체적인 투자규모를 산정할 때 2019년 미이행 자금에 대한 산정을 하지 않고 계획을 수립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된다면 전체적인 계획이 바뀌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투자규모 자체가 순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투자규모를 순증할 수 있을지 검토해 봐야 하는 것은 우리 사무처의 일이 아니고 사업자가 검토해서 그것을 반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심사과정에서 사업자에게 "올해 투자 분을 집행할 수 있느냐?" 그것을 계속 물었는데 "다 못할 것 같다"는 답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것에 대해 향후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것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계획이 서야 하고, 지금 499억원이라는 것은 그것이 포함이 안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시정명령을 두 차례 받았던 138억원은 3년간 나누어서 집행하겠다는 계획이 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이 부분이 확정되는 대로 499억원 본 계획과는 별도로 이것을 더 추가 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넣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지금 장 과장이 이야기한 것은 사업자들이 제출한 계획이 이행 가능해야 우리가 허가를 해주는데 지금 전문가 이야기도 수입과 지출 전체를 봤을 때 현재 영업조건 환경 하에서는 가능할 것 같다고 하는데, 만일 올해 미이행 금액을 다시 우리가 부가할 경우 그것에 대한 추가 수입이 들어오지 않을 때는 사업계획 자체가 이행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허가 심사기간을 기준했을 때 사업자가 거기에 맞춰서 향후 3년간 계획을 수립해 왔는데, 지금 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새롭게 전체를 짜지 않으면, 수입과 지출 문제가 또 어긋나게 되면 사업계획 실현 가능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허 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상임위원

- 제가 수정안을 내면 어떻게 싶습니다. 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17년, 2018년뿐만 아니라 2019년도에도 투자계획이 미집행된 부분이고 이 부분이 계획안에 제대로 포함되지 않았던 문제점들을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허가 심사에 있어서의 기산점, 즉 사업 계획 집행의 이행실적을 재허가 시점으로 끊어서 기간을 계산할 때 전체 사업실적 평가에 빠진 부분까지 내년 상반기에 다시 한 번 확정하고 특정해서 계획을 다시 받은 뒤 그 이후에 재허가 조건을 다시 내주기에는 시기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고려해야 하는 사안들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따라서 올해 미이행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시정명령이나 별도의 조치를 하고, 재허가와 관련해서는 현재 제출된 재허가 계획서를 기준으로 평가했던 이 내용으로 하되, 재허가조건을 명확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대신에 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취소한다'라고 보다 더 강력한 의미를 뒤서 진전시켜 나가는 것이 어떻게 싶습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예.

○ 한상혁 위원장

- 지금 허 위원님 수정 의견 역시 표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은 추후 반영해서 시정명령 등을 통해 조치하는 문제이고, 현재 의결주문에 있어서는 아까 표 위원님 말씀하셨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를 '취소한다'에 대해 원안 의결하는 부분에 대해 동의하시는 내용이지요?

○ 허 욱 상임위원

- 예.

○ 한상혁 위원장

- 김 위원님 찬성하십니까?

○ 김창룡 상임위원

- 예,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 중에서 의결주문 <1안>은 그대로 가고 <2안> 중 허가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라는 표현이 맞지 않습니까?

○ 장대호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 한상혁 위원장

- ‘허가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재허가 조건 중 아래의 조건에 대한 연도별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한다’로 바뀌어서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입장에서 위법상태, 시정명령 미이행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그 미이행 상태를 해소하고 신규 제작투자 부분까지 포함해서 내년 초반 1차 연도 이행결과를 보고 이 부분들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취소 절차에 바로 도입한다는 의미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처에서 지속적으로 팔로업해서 이행상태를 점검하고, 만약 미이행 시에는 바로 절차에 돌입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호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나. 2019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 - (주)경기방송 (2019-67-331)

○ 한상혁 위원장

- 이어서 <의결안건 나> “2019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 (주)경기방송”에 대하여 지상파방송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장대호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2019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입니다. 2쪽입니다. 의결주문입니다. <1안> (주)경기방송에 대하여 재허가를 거부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 보호를 위해 <붙임1>과 같이 방송연장을 명령한다. <2안> (주)경기방송에 대하여 <붙임 2>와 같이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가하여 조건부 재허가를 하되, 허가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허가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재허가 조건 중 아래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경기방송은 이 조건을 통보받은 즉시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를 방송사 경영에서 배제할 것,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는 방송법 제15조의2에 따른 방통위의 승인을 얻을 것, <2> 경기방송의 소유·경영 분리 및 경영 투명성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재허가 이후 3개월 이내에 아래의 조치를 취할 것, 대표이사 책임경영을 위한 정관 개정 및 공개채용 등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마련할 것, 재허가 이후 3개월 이내에 주요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아닌 사람을 독립적인 사내이사로 위촉할 것,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모절차 등을 거쳐 사외이사·감사 또는 감사위원을 선임할 것, <3> 새로 구성된 이사회는 이사회 구성 이후 3개월 이내에 경영투명성 제고 및 편성의 독립성 강화 등을 위한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방통위의 승인을 받은 후, 그 이행계획을 매년 4월 말까지 방통위에 제출할 것, 3쪽 제안이유입니다. 제62차 전체회의에서 ‘(주)경기방송에 대해서는 경영 투명성 제고, 편성의 독립성 강화 등을 위한 계획 확인 후 재허가 여부를 의결’하기로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주)경기방송에 대한 재허가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경기방송 일반현황 및 재허가 심사 결과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추진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주)경기방송이 제출한 경영투명성 등 계획의 주요내용입니다.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이행 계획> 첫 번째, 전문경영인 운영입니다. 현행과 같이 전문경영인 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 운영할

예정임, 사외이사 및 감사제도 강화입니다. 2013년 이후 현재까지 감사위원회 차질 없이 운영하고 있음. 총주식의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 및 이사는 감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도록 2020년 1월 정기이사회에서 규정을 수정 의결할 계획, 現감사위원장은 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관계로 감사위원직을 사임, 다음 조직 및 업무 분장 관련입니다. 권한 분산을 위해 대팀제에서 국체제로 조직을 개편하였음. 이것은 방통위가 의결 전인 2019년 11월 5일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보도부문 사장이 보도 관련 사항을, 대표이사는 제작·경영·인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책임하여 운영, 전무이사는 자금지출 및 신사업 콘텐츠를 전담할 계획, <편성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계획>입니다. 편성 독립을 위해 직원으로 구성된 '편성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프로그램 개편 시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편성규약을 개정할 예정, 다음 (주)경기방송에 대한 청문 결과입니다. <가> 청문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나> 경기방송의 의견진술 내용입니다. 최다액출자자, 2대 주주는 전무이사에게 경영을 일임하였고, 전무이사가 2012년부터 경영을 맡으며 과거 임원의 부당한 지출 등 문제가 되었던 사항들을 해소하였음.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겠음. 본인은 주식이 있어서 특수관계자 문제로 대표이사를 못 맡고 있음. 전무이사는 지인이었던 前대표이사를 사내이사로 추천하였으나, 대표이사가 언론사 경험이 없어 내부관리는 전무이사가 하고, 대외업무는 대표이사가 하는 것으로 업무를 분장하였음. 前대표 사임 시 이사회 의 압력은 없었으며, 대표이사를 1년마다 재신임하는 것은 과거 횡령 등 사고의 경험 때문임. 연초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신청했던 HKL은 해외사업을 위해 지인들과 협의해 설립한 회사임. 호주건설에 자금난이 있어서 문제가 생길까 우려돼 방통위에 변경신청 서류를 제출했으나 신설법인이라 어렵다고 해서 변경을 포기함. 감사위원회는 1년에 2회 정도 개최되며, 2대 주주인 감사위원은 감사위원회에 항상 참석하였음. 현재 2대 주주는 감사위원을 사임하였음. 직원 징계를 이사회에서 요청해도 되는지 노무사,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문제가 없다고 하여 진행하였음. 노조에서도 징계에 반대하지 않았으며, 직원징계관련 조사는 보도내용의 사실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을 조사하지는 않았음. 편성과 보도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편성심의 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임. 보도제작국장을 편성책임자로 지정할 예정이며, 전무이사는 관련 비용 지출 이외에 보도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음. 다음 청문주재자의 의견입니다. 경기방송의 경영의 불투명성, 편성 보도에 관한 자의적 운영은 2013년, 2016년 재허가 시에도 문제가 되었던 사항임. 방송법상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 신청을 해야 하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로서 변경승인 신청 혹은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음. 국민의 자산인 전파를 운용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주주와 이사진의 이권에나 기여하는 듯한 경기방송에 대해, 언제까지 '경기도의 얼굴, 기간방송'이라는 이름으로 방통위가 연명해 주어야 할지를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아래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 경기 방송 재허가에 대해서는 엄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허가 요건 미충족입니다. (주)경기방송은 2019년 재허가 심사결과 재허가 기준점수인 650점 미만으로 평가되었고, 중점심사사항 평가점수도 배점의 50%에 미달하여 재허가 거부 요건에 해당됩니다. 다음 개선계획 매우 미흡입니다. 방통위는 2019년 12월 11일 경기방송의 재허가를 보류하면서 경영 투명성 제고, 편성의 독립성 강화 등을 위한 계획을 확인 후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으나, 경기방송이 제출한 계획을 검토한 결과, 현 상황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방송사 경영의 현상 유지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개선방안이 포함되지

않았고 개선의지도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10년 소유규제 위반 건 이후, 2013년, 2016년 재허가 심사 시 경영투명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관련 조건을 지속적으로 부가하였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법 위반상태의 지속입니다. 대주주 등 주주 과반 이상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전무이사는 방송법 제15조의2(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자'로 볼 수 있으나, 방통위의 변경승인 신청과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방송법 위반상태가 지속 중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대표이사의 경영권 제한입니다. 독립성 제고를 위해 전문경영인 체제를 운영한다고 하였으나,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대표이사를 이사회에서 1년마다 재신임하는 방식으로 책임경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 부적절한 이사회 운영입니다. 2대 주주가 상법과 정관에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출석 및 의결을 전무이사에게 포괄적으로 대리토록 하였으며, 당사자가 본인의 거취에 관계된 안건을 다루는 이사회 회의의 의장을 맡고, 이사회에서 사실상 직원징계를 결정하는 등 이사회를 부적절하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위원회 독립성 문제입니다. 대주주가 경영 및 이사회 직무를 감시해야 할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장을 맡는 등 감사위원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로 운영하였습니다. 前 감사위원장은 2대 주주이자 사내이사이며, 일본에 주로 거주합니다. 2010년 소유제한 위반으로 방통위 제재를 받은 경력도 있습니다. 다음 허위 자료 제출입니다. 경기방송이 제출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 회의록에는 2대 주주가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한 결과 회의 당시 일본에 체류하고 있었던 경우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편성의 독립성 문제입니다. 주요주주가 보도 및 편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반면에 편성책임자를 팀장급으로 선임하는 등 방송법 제4조의 취지를 간과하고 있으며, 편성의 독립성이 사실상 지켜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협찬수익 과다입니다. 지자체로부터 협찬이 과다할 경우 방송의 공정성, 언론의 감시기능 등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 방통위가 2010년, 2013년 재허가 시 과도한 협찬운용을 지향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타방송사업 매출이 전체 매출액의 50%를 상회하여 세부내역을 확인한 결과, 지자체 캠페인, 시정홍보 등 협찬수익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과도한 협찬을 지양하라는 권고사항 미이행에 대한 지적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단됩니다. 검토의견 <1안>은 '재허가 거부'입니다. (주)경기방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재허가를 거부한다. <재허가 거부 사유>입니다. (주)경기방송은 2019년 재허가 심사결과 재허가 기준점수인 650점 미만으로 평가되었고, 중점심사사항 평가점수도 배점의 50%에 미달하여 재허가 거부 요건에 해당됩니다. 주주 과반 이상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된 자'가 경영 전반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법 제15조의2에 따른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방송법 위반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경기방송이 제출한 '경영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계획'에는 실질적인 개선방안이 포함되지 않았고 개선의지 또한 매우 미흡하며, 2010년 소유규제 위반 이후, 2013년, 2016년 재허가 심사 시에도 경영투명성 관련 조건을 지속 부과하였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요 주주 등이 대표이사가 아닌 특정 사내이사 1인에게 경영을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등 경영 책임을 사실상 방기하고 방송법 위반 상태를 용인하고 있습니다. 주요주주가 보도 및 편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반면, 편성책임자는 방송법 제4조의 취지를 간과하고 팀장급으로 선임하는 등 편성의 독립성이 사실상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10쪽 <2안> '조건부 재허가'입니다. 경기방송에 대해서는 <1안>과 같이 재허가를 거부하여야 마땅하나, (주)경기방송이 유일한 지역 종합편성 라디오 사업자

로서 20년 넘게 방송을 해온 점, 시청자들의 시청권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영 투명성 확보, 방송법 위반상대 시정 등을 조건으로 재허가하되, 해당조건 미이행 시에는 방송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허가 취소, 업무 정지, 광고 중단 등의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조건안>은 (주)경기방송에 대하여 <붙임 2>와 같이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가하여 조건부 재허가를 하되, 허가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허가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재허가 조건 중 아래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아래 조건은 의결주문 <2안>의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재허가 거부 시에는 방송 연장을 명령하고, 재허가 결정 시에는 허가증을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 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옥 상임위원

- 지난 9월 25일 경기방송 이사회 직후에 경기방송 임직원과 경기도의회 등이 공고한 경기방송의 입장문 일부를 잠시 인용해 보겠습니다. “약 70%의 주주들은 같은 주주인 현준호 전무이사에게 모든 권한을 이미 위임했습니다. 이사들은 직원 전체와 현준호 전무이사를 놓고 선택하라고 한다면 생각할 필요조차 없이 현준호 전무이사를 선택할 것입니다“. 경기방송 이사들의 이러한 인식은 지역라디오방송의 주주나 경영진의 문제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봅니다. 최근 3년간의 경기방송 이사회와 주총 의사록을 살펴보면 현준호 전무이사는 직원 신분이면서도 동시에 임원인 이사이고, 또 때로는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맡기도 했습니다. 필요시에는 다른 사람을 대표이사로 내세운 뒤에 인사와 감사, 대외업무만 맡기고, 즉 이사회의 권한을 한정시키고 내부 조직관리와 재정은 본인이 맡는 등 사실상 현준호 본인의 뜻대로 회사를 운영하는 1인 경영체제를 유지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직원 사직서와 이사 사임계 처리 안건이 상정된 올해 9월 16일과 9월 25일 이사회에서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현준호 본인이 이사회 의장을 맡아서 사직서와 이사 사임계를 반려시키는 등 어처구니없는 전횡을 일삼아 왔습니다. 방통위는 이달 11일 경기방송의 재허가 의결을 보류하면서 경영의 투명성, 편성의 독립성 제고를 위한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지난 23일 청문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경기방송은 올해 재허가 기준점수인 650점에 미달한 것은 물론 경영 투명성과 편성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계획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에 앞서 경기방송은 지난 2010년 재허가 심사 때도 최다주주의 소유규제 위반에 대한 시정을 재허가 조건으로 부가받은 데 이어서 '13년과 '16년 재허가 심사 때도 여전히 소유제한의 위반 문제를 개선하지 못하고 조건을 부가 받았습니다. 청문주재자는 국민의 자산인 전파를 운용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방송의 공적책임과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주주와 이사진의 이권이나 기여하는 듯한 경기방송에 대해서 언제까지 '경기도의 얼굴, 기간방송'이라는 이름으로 방통위가 연명해 주어야 할지를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사무처가 경기방송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많은 고심과 노력 끝에 세부 개선계획을 담은 <2안>으로 조건부 재허가안을 준비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경기방송 운영 상황과 지난 10년간의 행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경기방송의 문제점이 '조건부 재허가'로 과연 근본적인 개선책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 저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따라서 경기방송의 '재허가를 거부'하는 <1안>으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재허가 거부'의 근거는 보고받은 바와 같이 매우 많습니다.

가장 크게는 지난 2010년 '조건부 재허가' 이후 현재까지 소유제한 위반 문제와 경영 투명성에 대한 시정명령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개선의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주요주주가 보도 및 편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직위를 맡고 있고, 편성책임자를 차장급으로 선임하는 등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천명한 방송법 제4조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공적책임 있는 방송사를 사유화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현준호 전무이사가 심기필 등 주주 70%로부터 주주권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사실상 경영권을 지배하는 자에 해당되나 이를 위한 최대액출자자 변경승인을 받지 않음으로써 방송법 제15조의2를 위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현준호 이사가 자신의 직원 사직서와 이사 사임 안건을 다른 이사회 의장을 맡아서 해당 안건을 반려 형식을 통해 부결시킨 것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상법 제368조 제4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심기필 이사 역시 이사는 스스로 이사회에 출석해야 하며, 대리는 출석할 수 없다는 상법 제391조 제2항 위반, 즉 대리 참석 불가 위반입니다. 이사회의 출석을 수차례 허위로 기재해서 상법 제391조의3을 위반했습니다. 이밖에도 대표이사의 경영권 제한과 감사위원회 독립성 부재 등 이사회 운영을 마치 개인회사처럼 해 오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이고, 지자체로부터의 과도한 협찬을 지양하라는 권고사항도 여태껏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경기방송의 재허가를 거부하는 <1안>으로 의결하는 것이 방송의 공적책임을 회복시키는 근본적인 개선책이며, 방송사업자 재허가 제도의 기본 취지를 살리는 것이라고 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허 위원님께서 <1안> 재허가 거부안에 동의하시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제가 방통위에 오고 나서 여러 차례 방통위의 재허가·재승인 업무를 굉장히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 사이 방통위가 재허가·재승인 조건을 부여한 것에 대해 사업자들이 이것이 얼마만큼 위중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례를 여러 군데서 본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방송은 조금 전에 존경하는 허 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방송법 위반사항, 또는 상법을 어긴 사항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거부해서 새로운 사업자를 인선하느냐, 아니면 조건을 걸어서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느냐의 문제인데 안건에 올라와 있는 경기방송이 지역방송의 유일한 종합편성방송사업자는 아니겠습니까? 경인FM이 별도로 있는데 이것은 지역사업자인 것은 맞아도 유일한 지역사업자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라디오방송은 유일하지 않는데 종합편성이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경인FM도 종합편성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음악FM입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유일하다는 표현은 일단 빼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입니다.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그것은 수정하겠습니다. 독립 라디오이고, 다른 지상파방송도 있긴 있습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재허가를 거부하는 것 이외에 <2안>으로 조건부 재허가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단서가 재허가를 거부하여야 마땅하나 경기방송이 지역 종합편성 라디오 사업자로서 20년 넘게 방송을 해온 점, 그리고 청취자들의 청취권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건부로 재허가하자고 되어 있는데, 저는 한번 확실하게 안의 내부 사정을 고칠 수 있는, 경영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고쳐서 사업자로서 계속 갈 수 있는 방안을 한 번쯤 더 택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해서 저는 <2안>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허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또한 표 위원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것이 어떤가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이 재허가 건과는 별도로 수사의뢰를 적극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고한 내용을 보면 경기방송 같은 경우 청문 당시 전무이사 현준호가 사내이사 2대 주주 심기필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았다고 위임장까지 제출했는데 상법상 보면 주주총회에서 대리인 의결권 행사는 가능하지만 이사회에 대해서는 대리 규정을 하지 않습니다. 전무이사가 포괄적 위임을 내세워서 상법과 정관에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 직원을 징계하는 등 다분히 불법의 소지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수사의뢰를 검토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또 방송법 위반도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주주 등 주주 과반 이상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전무이사가 방송법 제15조의2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방통위에 변경승인 신청과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것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불법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또 이미 나온 이야기지만 방통위에 허위자료 제출, 이 부분도 수사를 의뢰하는 것을 검토해 볼 것을 권고드립니다. 말하자면 방송법과 상법을 토대로 수사를 의뢰해서 이 수사 결과에 따라 법 위반이 확인되면 방송 허가는 즉각 취소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그리고 안건 10쪽에 보면 <2안>의 경우 '허가 유효기간 3년에도 불구하고 재허가 조건 중 아래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허가를 취소한다'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종전 OBS 건과 마찬가지로 '취소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취소한다'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 **김창룡 상임위원**

-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추가 의견 있으십니까? 허 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옥 상임위원**

- <2안>이 다수인 것 같아서 그대로 의결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저는 여전히 <1안>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2안>으로 의결된다면 저는 좀 전에 존경하는 김창룡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과거 경기방송 소유지분과 관련해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았는데 방통위가 조사권이 없어서 이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2안>으로 다수결로 결정된다면 경기방송에 대해 수사의뢰를 요청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경기방송의 장부상 소유지분과 실제 소유지분 구조가 동일한지, 또한 주요주주들 간 내부 거래 여부, 일본에 거주하는 심기필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의 세금 처리 문제, 방송업 외 음식업 운영 등 해외 합작투자 등과 관련된 독직이나 배임 문제 등에서도 저는 깊이 있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만약 <2안>으로 의결이 된다면 저는 부대의견으로 김창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부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1안>을 지지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국회에 가 계셔서 참석하지 못하신 부위원장님께서 의결권은 없지만 본인은 <2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저에게 개인적으로 피력하셨습니다. 추가 의견 있으십니까?

○ **표철수 상임위원**

- 달리 의견은 없고 수사의뢰가 필요하다는 김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수사의뢰 부분은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송법 위반사항은 일단 방송법에 따라 방통위가 시정명령을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형벌 벌칙조항이 있는 한해서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법 위반 부분도 좀 더 확인해서 그것은 별도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그 부분은 부가의견이 아니고 별도 안건으로 처리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소유 지분 문제, 차명 보유 문제도 대상이 될 것 같고, 지금 허 위원님 말씀하셨던 각종 위반 의혹 사실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강제수사권이 없어서 조사하지 못했지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건은 재허가 절차와 별도로 과연 수사해서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만약 불법사실이 확인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은데 허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전체적인 의견을 고려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 허 옥 상임위원

- 그러면 저도 '허가를 취소한다'고 문안을 바꾸고, 수사 조건 관련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부대조건으로 붙인다면 저도 <2안> '조건부 재허가'에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대조건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허 옥 상임위원

- 일단 방송법과 상법 관련해서 부대의견인데, 제가 관련된 이사회 회의록, 주총 의사록 등을 살펴보면 자금흐름이나 관련된 예산들이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이것을 실제로 수사를 한다면 관련된 사항들이 다 밝혀지고 당연히 저는 허가 취소가 될 수밖에 없다고 여겨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부로 재허가하면서 그동안 라디오방송사업자로서 20년 동안 방송을 해온 점과 시청자들의 시청권 보장은 고려하되, 이런 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사 의뢰해서 일단 소유지분 구조의 장부상 지분과 실제 지분이 어떤지, 현금흐름과 배당소득의 처리 문제 등 관련된 사항들을 수사 의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사 과정에서 관련된 예산이 조금 더 확대가 되면 저는 이 문제를 보다 더 근원적으로 치료할 수 있고 그것이 조건부 재허가의 의미를 되살리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의결주문 중 <2안>으로 하되, 허가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재허가 조건 중 아래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한다로 수정하고, 지금 말씀하신 수사 의뢰 부분은 상대방의 이행을 요구하는 조건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지 않고, 우리가 검토해서 조치하되, 간담회를 통해 별도로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의결주문 <2안> '(주)경기방송에 대하여 <붙임 2>와 같이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가하여 조건부 재허가를 하되, 허가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허가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재허가 조건 중 아래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한다', 아래의 재허가 조건에 대해서는 박스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으로 해서 이 안건은 원안을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다. 2019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 - (주)티비씨 (2019-67-332)

○ **한상혁 위원장**

- 마지막으로 <의결안건 다> “2019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 (주)티비씨”에 대하여 지상파방송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장대호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2019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 (주)티비씨 건입니다. 의결주문은 (주)티비씨에 대해 <붙임 1>과 같이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가하여 재허가하되, 허가 유효기간은 4년으로 한다. 허가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13일 신청한 티비씨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이 거부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안이유입니다. 제62차 전체회의에서 ‘재허가 심사기간 중 최다액출자자 변경된 (주)티비씨에 대하여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검토 후 재허가 여부 등을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티비씨 청문을 실시하고, 재허가 심사를 재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주)티비씨에 대한 재허가 심사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주)티비씨 일반현황과 재허가 심사결과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주)티비씨 청문 결과입니다. 청문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주)티비씨 및 최다액출자자 의견 진술 내용입니다. 방송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배구조 투명성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지배구조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였음. 그 과정에서 상법과 공정거래법상 절차를 준용하면 모든 권리 의무 법적 지위가 자동승계되는 것으로 인지하여 방송법상 지위도 자동 승계되는 것으로 잘못 인지하였음. 법적 절차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누락하려고 한 의도는 없으며, 이러한 점을 감안해 주셔서 선처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 검토하는 조직이나 인력을 보강하겠습니다. 청문 주재자 의견입니다. (주)귀뚜라미홀딩스가 방송법을 간과해서 발생한 일로, 고의성이나 적극적인 위법성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재허가 자체를 거부하는 것보다는 향후 최다액출자자 변동으로 인한 위법적 흠결, 하자 치유에 초점을 맞추기 바람. 재허가 심사 사항입니다. 재허가 심사는 청문주재자 의견과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를 고려하여 티비씨의 재허가 심사를 재개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27일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재허가 심사 위원회 심사 의견입니다. 재허가 심사 중 행정청의 변경승인 없이 최다액출자자를 변경한 것은 지상파방송사업자와 해당 방송사의 최다액출자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방송관계 법령을 숙지하지 않고 국민 앞에서 약속한 공적책무의 중요성을 가벼이 여긴 것임. 이에, 방송관계법령 전문가 충원 또는 외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필요, 검토의견입니다.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후 재허가 심사를 완료해야 하나 허가유효기간 만료가 도래되므로 연내 재허가 심사를 완료하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얻지 못할 시 재허가 효력이 상실되는 등 해제조건 부가가 필요합니다. 방통위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최다액출자자를 변경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음 주요 재허가 조건입니다. 제62차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방송사업자 공통조건 및 권고사항을 동일하게 <붙임 1>과 같이 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13일 신청한 티비씨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이 거부될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송법 등 방송관계법 전문가 충원 또는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 등 방송사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재허가 이후 6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12월 말 재허가 방송국 허가증을 교부하고, 내년 1월부터 2019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백서 발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 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상임위원

- 보고한 티비씨 재허가의 건은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역사에서 명예롭지 못한 사건 가운데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봅니다. 티비씨의 변경된 최대주주인 귀뚜라미홀딩스는 (주)귀뚜라미, (주)나노캡, (주)귀뚜라미홈시스 간 분할합병에 따라서 각사의 투자 부분을 (주)귀뚜라미가 흡수 합병하고 상호를 (주)귀뚜라미홀딩스로 변경한 회사입니다. 귀뚜라미는 기존 보일러 중심 사업을 뛰어넘어서 범양, 센추리의 냉방사업까지 인수해서 현재 사세를 크게 확장하고 있으며, 지난해 연결매출액이 5,586억원, 영업이익이 300억원이 넘는 대기업입니다. 티비씨 역시 2018년 말 기준 자산 1,168억원, 매출액이 406억원, 당기순이익이 34억원에 달하는 코스닥 상장사입니다. 청문회에서 귀뚜라미 측 임원은 분할합병을 추진하면서 상법과 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검토에 중점을 두었고, 티비씨의 최대주주 변경은 피합병 및 합병회사 간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를 통해 최다액출자자의 지위가 당연히 이전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티비씨의 지분을 28.6%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귀뚜라미가 방송사 최대주주로서의 공적인 책임의식과 법률적 전문성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또한 상장된 방송사 최대주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매우 의구심을 갖게 하는 수준입니다. 티비씨는 재허가 심사를 받으면서 최대주주 변경사항 등 방송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 소홀로 재허가 여부와 청문회 개최, 재심사라는 행정력의 낭비를 가져온 데 대해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청문주재자는 귀뚜라미홀딩스가 고의성이나 적극적인 위법성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재허가 거부보다는 위법성 흠결과 하자 치유에 초점을 맞추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방송법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고, 행정청의 재허가 심사를 형해화시킨 데 대해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원칙적으로는 티비씨가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승인받은 뒤에 재허가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지만 올해 말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지난 27일 긴급히 재허가 심사를 다시 개최했고, 재허가를 하되 향후 최다액출자자 변경 심사에서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재허가 효력이 상실된다는 해제조건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방송관계법 전문가 총원 등의 방법으로 방송사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토록 할 것과 방송의 공정성 및 경영 투명성 보장을 위해 사외이사,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의 장기 연임 문제를 해소토록 한 것 등 티비씨의 재허가 조건은 대부분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의결주문에 동의하면서도 귀뚜라미홀딩스의 방송법 제15조의2제1항 위반과 관련된 제재, 그리고 티비씨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별도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결 내용에 대해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추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심사계획서를 제출해 놓고 심사를 하는 도중에 최다액출자자가 바뀌는 정말 희한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뚜라미보일러는 SBS의 2대 주주였던 적도 있고 오랫동안 방송사업을 해 온 사업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이렇게 소홀하게 했다는 것에 있어서 일단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이런 한계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부랴부랴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소집해서 재허가 심사를 다시 하게 되고, 그리고 오늘 이런 의결을 하게 되기까지 이것은 사업자 측에 반드시 패널티를 주어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재허가·재승인 업무는 방송사업자에게 라이선스를 주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사업자들이 굉장히 소홀히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경종을 다시 한 번 반드시 올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경우가 없기를 바라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우선 안전 올라온 원안에 동의하면서 거듭 패널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를 해서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원안에 동의하시는 의견이었습니다.

○ **김창룡 상임위원**

- 저도 특별한 고의성이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8. 기 타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전 처리는 이것으로 모두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사안은 표 위원님이 심사위원장님이셔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사안의 엄중성을 생각할 때 브리핑하는 것을 사업자들에 대한 엄중 경고의 의미를 담아서 표 위원님께서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가능하시겠습니까?

○ **표철수 상임위원**

- 예, 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차기 회의는 경자년(庚子年) 새해 2020년 1월 8일 오전 9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자 분들도 취재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9. 폐 회

○ 한상혁 위원장

- 이상으로 2019년도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5시 42분 폐회 】